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년 1월 1일 시행 및 법률 제17224호, 2021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 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50조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02조 중 “법 제92조제4항”을 “법 제92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14일 전까지 성능검사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과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3(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 인원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교육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별표 11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1의2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	----------------	----	-------------	-------------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1. 31.>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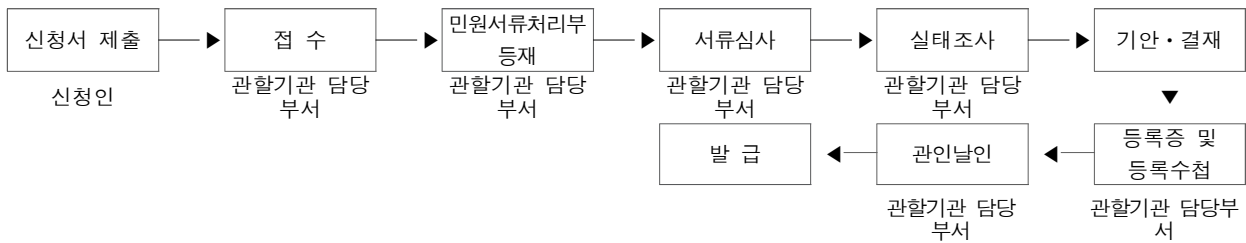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1. 3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3호서식 양수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신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신고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 <u>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u>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u>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u>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

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6항-----
-----.

제104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14일 전까지 성능검사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신 설>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도지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과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3(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매년 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 인원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교육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별표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라.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1의2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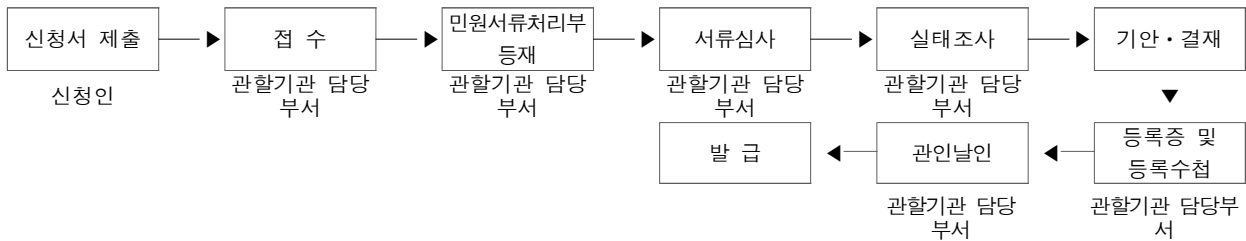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측량업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수로)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수로)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 처리부등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 급
신청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업종	측량업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수로)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수로)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발 급
신청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법인 합병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측량(수로)기술자의 명단 5. 제4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수로)기술 경력증명서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7.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 락 처	(044) 201-3481